

2025년 제2차 임시이사회

임시이사회 회의록

■ 일시 : 2025년 06월 20일(금) 16:00~17:00

■ 장소 : 마리아의아들수도회 몬띠피정의집 강당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58번길 138(이목동))



사회복지법인 바다의 별

천주교 마리아의 아들 수도회·CFIC

사회복지법인 바다의별

2025년 제2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 이 사 : 6명 (대표이사 김광수, 이사 여운암, 이사 배병우, 이사 전홍준, 이사 박춘상,
 외부이사 이영호)
- 감 사 : 0명

1) 성원보고 및 개회 선언

○ 법인사무국장 우현구 : 총 재적이사 8명 중 이사 6명이 회의에 참석하여, 법인 정관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성원 되었음을 보고하다.

○ 대표이사 김광수 : 사회복지법인 바다의별 2025년 제2차 임시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2) 대표이사 인사

○ 대표이사 김광수 : 참석한 분들께 감사의 인사말 전하다.

3) 전차회의록 접수 승인

○ 법인사무국장 우현구 : 제1차 임시이사회는 2025년 03월 13일에 개최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차회의록을 포함한 회의록 자료를 이사들에게 메일로 미리 송부하였고, 모든 이사들은 회의 자료의 내용을 미리 확인하였음. 이에 제1호 안건으로 사회복지법인 바다의별 법인 및 산하시설 2024년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의결 하였고, 제2호 안건으로 사회복지법인 바다의별 법인 및 산하시설 2025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었음을 설명하다.

○ 대표이사 김광수 : 2025년 제1차 임시이사회 전차회의록 승인 안건을 상정하며 미리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였으리라 생각하고, 이에 사회자의 안건 설명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을 묻다.

○ 이사 전원 : '없다'로 답하다.

○ 대표이사 김광수 : 이사들 전원이 이의 없음을 확인하였기에 전차회의록은 원안대로 접수 승인하기로 하다.

4) 부의안건 상정

○ 대표이사 김광수 : 본 임시 이사회에서 다룰 심의는 모두 3건으로 미리 송부한 자료들에 대하여 기관 담당자들의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은 질문하기를 당부하다.

5) 부의안건 심의

제1호.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 연임과 대표이사 선출의 건 심의의결

○ 대표이사 김광수 : 제1호 안건인 법인이사의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 연임과 대표이사 선출의 건에 대해 법인사무국에서 설명해 주기를 요청하다.

○ 법인사무국장 우현구 :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임원의 보충)에 의거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에 따라, 본 법인의 김광수 대표이사과 전홍준 이사의 임기가 2025년 06월 20일로 만료되어 정관 제18조(임원의 임기 등) 제2항, 제26조(의결사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 연임과 대표이사 선출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별첨으로 변경전·후 임원명부와 연임할 김광수 이사와 전홍준 이사의 이력서를 참고하기를 설명하다.

○ 대표이사 김광수 : 제1호 안건의 내용은 이사 연임과 대표이사 선출의 건으로, 임기만료될 이사에게 사전에 의사를 타진하고 연임의 의사를 구두로 밝힌 상황임. 이에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는 이사는 말해 주기를 요청하다.

○ 이사 전원 : ‘없다’로 답하다.

○ 대표이사 김광수 : 이사들의 전원 찬성으로 제1호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하여 연임된 김광수 이사와 전홍준 이사는 임기 3년 동안 법인의 이사로 수고해 주기를 당부하다.

○ 이사 전홍준 : 법인의 이사로 연임하게 되어 영광이며, 임기 동안 법인의 발전을 위해 노력 하겠음.

○ 대표이사 김광수 : 임기가 만료되는 대표이사의 선출을 위해 신임 대표이사 추천에 관한 동의와 재청의 절차를 거쳐 대표이사 선출을 진행하겠음을 밝히다.

○ 이사 여운암 : 대표이사 선출을 위해 현 대표이사가 진행해 줄 것을 동의하다.

○ 이사 박춘상, 이사 전홍준 : 여운암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대표이사 김광수 :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에 따라 신임 대표이사를 추천해 주기를 요청하다.

○ 이사 배병우 : 현재 대표이사인 김광수 이사를 추천하다.

○ 대표이사 김광수 : 다른 의견을 묻다.

○ 이사 전원 : ‘없으며, 찬성 한다’로 답하다.

○ 대표이사 김광수 : 이사들의 전원 찬성으로 대표이사에 김광수 이사가 선출되었으며 제1호 안건은 의결한 내용대로 통과하였음, 이어서 제2호 안건인 법인 이사의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 선임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다.

제02호.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 선임의 건 심의의결

○ 대표이사 김광수 : 제2호 안건인 법인이사의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법인 사무국에서 설명해 주기를 요청하다.

○ 법인사무국장 우현구 :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임원의 보충)에 의거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에 따라, 본 법인의 객춘상 이사의 임기가 2025년 06월 20일로 만료되어 정관 제18조(임원의 임기 등) 제2항, 제26조(의결사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별첨으로 변경전·후 임원명부와 신규로 이사 선임 예정인 객윤식 이사의 이력서를 참고하기를 설명하다.

○ 대표이사 김광수 : 제2호 안건의 내용은 이사 선임의 건으로, 신규로 선임할 이사에게 사전에 의사를 타진하고 선임의 동의 의사를 구두로 밝힌 상황임. 이에 질문이나 다른 의견 있는 이사는 말해 주기를 요청하다.

○ 이사 전원 : ‘없다’로 답하다.

○ 대표이사 김광수 : 이사들의 전원 찬성으로 제2호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하여 신규로 선임된 객윤식 이사는 임기 3년 동안 법인의 이사로 수고해 주기를 당부하다.

○ 이사 객윤식 : 법인의 이사로 선임되어 감사하고, 임기 동안 법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인사하다.

○ 대표이사 김광수 : 제3호 안건인 바다의별 직업재활센터 2025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 건에 대해 담당자가 설명해 주기를 요청하다.

제03호. 바다의별 직업재활센터 2025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의결

○ 원장 윤석진 :

- 바다의별 직업재활센터 2025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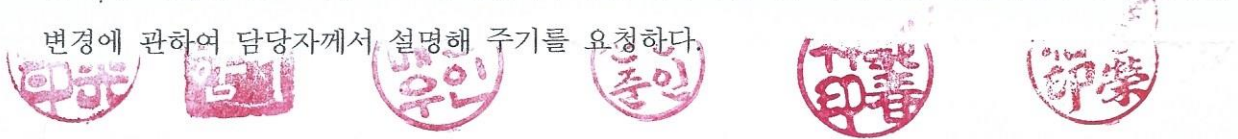
2025년 바다의별 직업재활센터 제2차 추가경정 예산 총괄표

번 호	시설명	2025년 1차 추경예산	2025년 2차 추경예산	증감액	비 고
1	바다의별 직업재활센터	1,546,798,302	1,559,988,302	13,190,000	예술누림지원 사업선정 및 운영비 증가
2					

○ 대표이사 김광수 : 제3호 안건인 바다의별 직업재활센터 2025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문이나 의견 있는 이사들은 말해 주기를 요청하다.

○ 이사 전원 : '없다'로 답하다.

○ 대표이사 김광수 : 이사들의 전원 찬성과 이의가 없어 제3호 안건은 원안대로 처리됨을 선포하다. 다음은 보고사항으로 장애인거주시설 바다의별 및 바다의별 직업재활센터의 운영규정 변경에 관하여 담당자께서 설명해 주기를 요청하다.



보고사항 : 장애인거주시설 바다의별 운영규정 변경(안)

○ 원장 이근관 :

- 장애인거주시설 바다의별 운영규정 변경(안)에 대해 보고하다.

변경전	변경후
재무회계관리 제4장 물품	재무회계관리 제4장 물품
제53조 【물품의 분류】 ① 물품은 비품과 소모품으로 분류 된다. ② 비품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써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예:10만원이상)의 물품등을 말한다.	제53조 【물품의 분류】 ① 물품은 비품과 소모품으로 분류 된다. ② 비품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써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예:30만원이상)의 물품등을 말한다.

③ 소모품은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사용 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 사용 일용 품 등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약품, 유류 등) 2. 단기간(예:내용연수 1년미만)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사무용품, 공구등) 3. 다른 물품의 수리·조립·제작(완성)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4.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의 소액의 물품으로써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여러개의 부분품을 조합 완성되는 것으 로써 전체를 1개의 단일품목으로 관리가 곤란 한 물품)또는 전압장비, 의류, 핸드폰(휴대용 으로써 개인에게 지급 되어 관리되고 있는 물품)등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③ 소모품은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사용 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 사용 일용 품 등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약품, 유류 등) 2. 단기간(예:내용연수 1년미만)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사무용품, 공구등) 3. 다른 물품의 수리·조립·제작(완성)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4.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0만원 미만의 소액의 물품으로써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여러개의 부분품을 조합 완성되는 것 으로써 전체를 1개의 단일품목으로 관리가 곤 란한 물품)또는 전압장비, 의류, 핸드폰(휴대 용으로써 개인에게 지급 되어 관리되고 있는 물품)등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	---

보고사항 : 바다의별 직업재활센터 운영규정 변경(안)

○ 원장 윤석진 :

- 바다의별 직업재활센터 운영규정 변경(안)에 대해 보고하다.

조문번호	기존 내용	개정 내용	개정이유
복무관리 제2절	제17조 【시간의 근무의 구분】	제17조 【시간의 근무의 구분】 [신설] ⑤ 시설의 운영상 시간의 총량 제 연간 운영계획(월별)에 따라 시간의 근무를 승인할 수 있다. 단, 특정한 주의 근 로시간은 52시간 초과 금지, 하루 4시간만 인정	수원시공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시간의 개선 시행 안내] 장애인복지과- 14709 (2025.5.27.)
복무관리 제6절	제39조 【공 가】 원장은 소속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	제39조 【공 가】 원장은 소속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 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 [신설]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 검진을 받을 때(수원시 지원 건강검진 포함)	수원시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

9. 폐 회

- 대표이사 김광수 : 본 회에서 다루어야 할 다른 사항 있는지 묻고, 없다면 폐회할 것을 동
의해 주기를 요청하다.
- 이사 전원 : '없다'로 답하다.
- 이사 배병우 : 2025년 제2차 임시이사회 폐회를 동의하다.
- 이사 전홍준 : 배병우 이사의 폐회동의에 재청하다.
- 이사 전원 : 폐회를 찬성하다.
- 대표이사 김광수 : 이상으로 2025년 제2차 임시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위 기록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참석인원이 날인 함.

2025년 06월 20일

사회복지법인 바다의별

대표이사 : 김 광 수 (인)

이 사 : 여 운 암 (인)

이 사 : 배 병 우 (인)

이 사 : 전 흥 준 (인)

이 사 : 곽 춘 상 (인)

이 사 : 이 영 희 (인)

본 이사회회의록의 적정성을 감사가 확인하고 기명날인 함.

감 사 : 남궁성배 (인)

감 사 : 강 동 형 (인)